

의안번호	제556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5회)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10월 31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
----------	-----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발의자 : 김재종, 이광진, 김종필,
강현삼, 김영주, 박문희,
임현경 의원

1. 개정이유

「하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 5퍼센트 이상 증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안 제5조, 제6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
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13. 9. 26. ~ 10. 16.)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를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3항 중 “잔액에 대하여는”을 “잔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사력을 허가량 만큼”을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으로 한다.

제9조 중 “「충청북도세 조례」”를 “「충청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 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른 점용 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p>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 -- 제37조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영 제42 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 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 ----- -----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 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 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 하여야 ----. 다만, 골재 채취</p>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②
(생략)

③ 골재 채취료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제2조제1항의 별표 1 제5호에 의한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

④ (생략)

⑤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잔액은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않은 -----
----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

②·③ (생략)

제9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
도세 조례」를 준용한다.

3. -----
--- 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

----- 「충청
북도 도세 조례」-----.

관계 법령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 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
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 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2013.3.23>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